

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운영 내규

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『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』 제10조에 따라 입학전형의 선행학습영향평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전형 선행학습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입학전형 선행학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
3. 입학전형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의 입학전형 반영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제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총장이 위촉하는 5인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영향평가의 객관성,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교 전임교원 및 입학처 직원, 고교 교육과정 전문가, 현직 교사 중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다. 단, 외부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입학처 직원으로 한다.

제4조 (회의) ①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5조 (영향평가 시기 및 반영) ① 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. 단,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(수시 및 정시)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 (결과의 공시)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지한다.

제7조 (기타) 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와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.